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기관명		
	대표자	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)		
	설립 근거		
	설립 목적		
	설립 연월일		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.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정관(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그 밖에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지정서 발급	→	통 보
신청인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		국토교통부		